

제4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회의 결과

회의명	◦ 제4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일 시	◦ 2018. 10. 30.(화) 15:00~17:00		
장 소	◦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 석	◦ 재적위원 : 27명		
	◦ 참석위원 : 21명 ※ 대리참석 3명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이건리(공동의장)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이상학(공동의장)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 박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운영관리팀장 이민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재동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안영균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장 박헌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윤순철
		참여연대 집행위원 박근용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양철승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류홍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 양세영
		여성신문 통합미디어본부장 신준철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양윤석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허승호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실장 이재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지선	내부제보실천운동 대외협력위원장 전경원
		중소기업중앙회 청렴문화팀장 전해숙(代)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2팀장 최문석(代)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략기획실장 김영아(代)	
	◦ 불참위원 : 6명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담당부장 김수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기획실장 노윤경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심재승	한국윤리경영학회 부회장 김영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정광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획관리국장 최한준
	◦ 공석 : 1명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 총괄분과 : 6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개혁위원 김대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김성현

회의명	◦ 제4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 대리참석 2명 포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 김호균	울산과학기술원 상임감사 이승억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재열(代)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심리역 이재형(代)
	◦ 전문분과 : 2명	공정·신뢰분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재일	공정·신뢰분과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한유나
	※ 제4차 민관실무협의회, 제6차 총괄분과 연석회의로 진행		
심의 안건	◦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경제분과) → 수정 동의, 일부 내용 수정 및 소수의견을 첨부하여 민관협의회에 상정 -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경우 감사인을 감독기관이 임의배정을 하게 되는지, 무작위로 배정을 하는지 객관적 기준이 필요함 - 외부감사인을 임의로 배정하는 것이 감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궁극적 대안인지 고려해봐야 함 - 외부감사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닌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재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함 -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문제가 반드시 이 기관들의 문제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법인의 신뢰성 제고 노력도 강구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함		
	◦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총괄분과) → 수정 동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민관협의회에 상정 - 재판의 유리한 결과를 받는 것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전관예우가 나타나므로 이에 맞게 수정해야 함 - 모든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제한 기간에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임 - 전직 대법관을 영구히 대법원 사건 수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유능한 변호사 선임 기회를 잃는 것임 - 변호사 등록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봐야 함 - 전관예우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전관들로 인해서 수임료가		

회의명	◦ 제4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상승하게 되는 것인데, 사회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제약이 필요함 -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 완화로 3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함 - 용어와 관련해서는 전관비리가 전관예우와 병행해서 사용해 온 것으로 전관비리 사용을 제안할 수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신고 활성화(공정·신뢰분과) → 보류 결정, 내용을 보완하여 분과차원에서 재논의 - 현재 여러 시민단체(참여연대, 흥사단,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 운동 등)가 공익신고를 도와주고 있는데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에 공익신고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함 -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을 실효성,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실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제안을 추가했으면 함 - 정식으로 제안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공공기관 및 사설 업체의 현황, 운영상의 문제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토론 안건	◦ 사립유치원 부패 관련 협의회 의견 발표 제안(박근용, 류홍번 위원) → 찬반 논의를 거쳐 제안자가 제안을 철회 - 현재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민관협회의 제안이 시차를 두고 나오게 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함 - 사립유치원 재무관리 시스템에 대해 개편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되었는데 굳이 제안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매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민관협회가 논의를 하게 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함